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425

발의연월일 : 2012. 09. .
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회

1. 제안이유

○ 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○ "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"를 신설함 (안 제19조제2항)

3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22조, 제23조

4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5. 기타 참고자료 : 없음

충주시의회 규칙 제 호

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	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
(신 설)	**②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.**

관계법령 발췌

[지방자치법]

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23조 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